

의안번호	제 84 호
의 결 년 월 일	1999년 5월 14일 (제 83 회)

의결사항
안가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년 월 일	1999년 5월 // 일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
------	----

제출년월일 : 1999. 5. //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1. 제안이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읍·면 설치조항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신설
- 제15조 읍·면 관할구역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저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2

붙임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01조”를 “제102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제목중 “【업무】”를 “【소관사무】”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소관사무”로 한다.

제9조 제목중 “【업무】”를 “【소관사무】”로 한다.

제12조 제목중 “【업무】”를 “【소관사무】”로 하고 본문중 “업무”를 “사무”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7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 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제102조----- ----- ----- ----- ----- -----.
제5조 【소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업무】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소관사무】 ①----- -----소관사무----- ----- ②----- ----- -----소관사무----- -----.
제9조 【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략)	제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 【업무】 환경사업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9. (생략)	제12조 【소관사무】 환경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 【설치】 ①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14조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삭제)

(별표2)

▣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제2항 관련)

읍·면사무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보 은 읍 사 무 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보 은 읍 일 원
내 속 리 면 사 무 소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내 속 리 면 일 원
외 속 리 면 사 무 소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외 속 리 면 일 원
마 로 면 사 무 소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마 로 면 일 원
탄 부 면 사 무 소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탄 부 면 일 원
삼 승 면 사 무 소	보은군 삼승면 원담리	삼 승 면 일 원
수 한 면 사 무 소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수 한 면 일 원
회 남 면 사 무 소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회 남 면 일 원
회 북 면 사 무 소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회 북 면 일 원
내 북 면 사 무 소	보은군 내북면 창리	내 북 면 일 원
산 외 면 사 무 소	보은군 산외면 구터리	산 외 면 일 원

첨 부 자 료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 1부】



보 은 군

○○군조례 제○호

○○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 청

제3조 (실·과·담당관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과·○○과·…… ○○담당관을 둔다.

②실·과·담당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2. 자치행정과장

⋮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조 (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조 (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조 (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에 둔다.

제○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2.

⋮



제○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사 업 소

제○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

가.

나.

다."

2. ○○사무소

가.

나.

다.

⋮



제5장 읍·면

제○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들 4로 조례로 정한다} ~~별표○와 같다.~~

제○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조 (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읍·면출장소

제○조 (설치) ①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과 같다.

제○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2.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